

교육·연구기관용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01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로그(log) 등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2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언제 만들어 졌을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의무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에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약 350만개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서식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이 마련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됩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이 제한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는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고객)의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법 집행체계가 정비됩니다.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각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관련 제도·정책의 시행,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02 공공기관의 조치사항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 법령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합니다.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합니다.

2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국민, 지역민 등)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항목 |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그러나, 법령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원칙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참고하세요

3 상급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참고하세요

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탁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 | |
|-----------------|----------------------------|
|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재(수)탁자 |
|-----------------|----------------------------|

- 공공기관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위탁 원칙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를 참고하세요

5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참고하세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31조를 참고하세요

6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03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알아봅시다



1 직원(근로자)의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국민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직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인사 관리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직원 채용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획득
- (2) 인사 관리시 -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금지
- (3) 직원 퇴직시 - 복무기록 발급, 사회보험 증명 등을 위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근거 또는 직원 동의하에 보존

2 주민등록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를 참고하세요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된다는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시)
- (2)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연동시)
- (3) 연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경우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를 참고하세요

4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는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이 금지되나, 공개된 장소에 아래의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2) 범죄예방, 수사에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내판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참고하세요

0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해 알아보시다



1 정보주체(고객)에게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고객)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제한·거절하거나 정정·삭제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8조를 참고하세요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이익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05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얻고 싶다면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www.privacy.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개인정보보호)을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자료와 교육·홍보 자료 다운로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연수원(homepage.study.go.kr) 「감책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수강 신청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학습 7시간 인정

